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387호 2019. 5. 13.(월)

공 고

○ 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2019-657호

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13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축구팀의 선수단 급여를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한국실업축구연맹 선수관리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최저 기본급 기준에 맞게 개정
- 승리수당 지급기준을 타 구단과의 형평성 및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축구팀 선수단의 동기부여와 사기 증진을 통한 우수한 성적을 올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직장운동경기부 축구팀 선수단 급여 산정표 조정(안 제9조 제1항 별표 3)
 - 선수단 급여 산정표 중 의무코치를 트레이너와 동일 연봉 적용(단위:천원)
: 의무코치 20,000~40,000⇒ 트레이너 25,000~45,000
 - 선수연봉액 기준표의 D등급과 E등급을 최저임금에 맞게 조정(단위:천원)
: D등급 21,000~28,000⇒22,000~28,000/E등급 12,000~20,000⇒21,000
- ※ 2019년 근로기준법 상 연간 최저임금 : 20,941,800원(8,350원×209시간×12월)
- 승리수당 지급기준 조정(안 제12조 제2항 제6호 별표 5)
 - 승리수당 지급기준이 각종대회 및 내셔널리그 홈과 원정경기 승리수당 차등 지급을 동일하게 지급 조정
⇒ 타 구단과 형평성 등 고려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

3. 입법예고

○ 2019. 5. 13(월) ~ 2019. 6. 3(월)[22일간]

4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6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3일까지 목포시장(교육체육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교육체육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646), 직접방문 등

7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육체육과(☎ 061-270-8639, FAX 061-270-36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.

붙임 1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수단 급여,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 적용례) [별표3], [별표5]의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【별표 3】

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(제9조 관련)

(축 구)

구 분	연 봉 액 기 준 표 (천 원)				
감 독	45,000 ~ 80,000				
코 치	36,000 ~ 55,000				
트레이너 (의무포함)	25,000 ~ 45,000				
구 분	연 봉 액 기 준 표 (천 원)				
	A급	B급	C급	D급	E급
선 수	55,000 ~47,000	46,000 ~38,000	37,000 ~29,000	28,000 ~22,000	21,000

【별표 5】

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(제12조 및 제21조 관련)

□ 축구팀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	포상금		각종대회 승리수당	내셔널리그 승리수당
		우승	준우승		
감독	감독	1,000,000	900,000	1,000,000	
코치	코치	800,000	700,000	800,000	
선수	엔트리 중 (평균) 70분 이상 출전	800,000	700,000	900,000	
	엔트리 중 (평균) 70분 미만~40분 초과 출전	700,000	600,000	700,000	
	엔트리 중 (평균) 40분 미만~10분 초과 출전	500,000	400,000	400,000	
	엔트리 중 (평균) 10분 이하 출전	300,000	200,000	200,000	
	엔트리 중 미출전	100,000	100,000	100,000	

붙 임 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	개정안					
【별표3】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(제9조 관련)						【별표3】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(제9조 관련)					
(축 구)						(축 구)					
구분	현행					구분	현행				
	연봉액 기준액(천원)						연봉액 기준액(천원)				
감독	45,000 ~ 80,000					감독	현행과 같음				
코치	36,000 ~ 55,000					코치	현행과 같음				
트레이너	25,000 ~ 45,000					트레이너 (의무포함)	현행과 같음				
의무코치	20,000 ~ 40,000						《삭제》				
구분	연봉액 기준액(천원)					구분	연봉액 기준액(천원)				
	A급	B급	C급	D급	E급		A급	B급	C급	D급	E급
선수	55,000 ~ 47,000	46,000 ~ 38,000	37,000 ~ 29,000	28,000 ~ 21,000	20,000 ~ 12,000	선수	55,000 ~ 47,000	46,000 ~ 38,000	37,000 ~ 29,000	28,000 ~ 22,000	21,000

현행							개정안					
【별표5】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(제12조 및 제21조 관련)							【별표5】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(제12조 및 제21조 관련)					
(축 구) (단위:원)							(축 구) (단위:원)					
구분		포상금		각종대회 승리수당 (홈&원정동일)	내셔널리그 승리수당		구분		포상금		각종대회 승리수당	내셔널리그 승리수당
		우승	준우승		홈	원정			우승	준우승		
감독	감독	1,000,000	900,000	700,000	900,000	700,000	감독	감독	1,000,000	900,000	1,000,000	
코치	코치	800,000	700,000	600,000	700,000	600,000	코치	코치	800,000	700,000	800,000	
선수	엔트리 중 (평균) 75분 이상 출전	800,000	700,000	600,000	700,000	600,000	선수	엔트리 중 (평균) 70분 이상 출전	800,000	700,000	900,000	
	엔트리 중 (평균) 75분 미만~45분 초과 출전	700,000	600,000	500,000	600,000	500,000		엔트리 중 (평균) 70분 미만~40분 초과 출전	700,000	600,000	700,000	
	엔트리 중 (평균) 45분 미만~25분 초과 출전	500,000	400,000	350,000	400,000	350,000		엔트리 중 (평균) 40분 미만~10분 초과 출전	500,000	400,000	400,000	
	엔트리 중 (평균) 25분 이하 출전	3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	엔트리 중 (평균) 10분 이하 출전	300,000	200,000	200,000	
	엔트리 중 미출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	엔트리 중 미출전	100,000	100,000	100,000	

의 건 제 출 서

시 행 규 칙 명	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			
의 건 제 출 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시 행 규 칙 안 조 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	

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9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)

목포시장 귀하